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이원택・안호영・어기구

임호선・한병도・윤준병

박희승 • 문대림 • 송옥주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 보호를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추, 배추, 무, 배,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생산자인 농 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을 농산물 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 격을 평년가격,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 라.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적정가 격의 산정, 차액의 보전비율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각각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 적정 가격보장제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 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평년가격 및 생산비용 등의 기준과 그밖에 적정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전비율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제16조의3(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 1. 대상 품목의 선정
 - 2.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
 - 3. 차액의 보전비율
 -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

반 이상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농산물 적정가격보장 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 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 시된 농산물의 가격이 적정가 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 조 감축약속 면제기준 범위에 서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 하는 제도(이하 "농산물 적정 가격보장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 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 적 정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 물가격보장세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

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 물 적정가격보장제 대상 품목 의 적정가격을 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 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기 초로 산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평년가격 및 생산비용 등의 기 준과 그 밖에 적정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적정 가격보장제의 차액(적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 하 같다) 보전비율을 심의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 ①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세를 보장제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 설>

<u>농산물적정가격보장심의위원회</u> <u>를 둔다.</u>

- 1. <u>대상 품목의 선정</u>
- 2. 대상 품목의 적정가격
- 3. 차액의 보전비율
- 4.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등의 결정
- 5.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관측 및 추계
-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이상 이어야 한다.
-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산물 적정가격보 장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 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